

## Korean Tax Update

February 2019, Issue 56

### [조세뉴스]

---

#### 기획재정부,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전문보기]

정부는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함. 시행령 개정안은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내주에 공포될 예정임. 디자인전문회사 등 인증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감안해서 디자인 연구개발비용 인정범위 합리화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한편, 특허를 탑재한 부품·소재를 내부거래로 납품한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개정안을 철회하고 현행 과세범위를 유지하는 등의 수정사항이 반영됨.

#### 기획재정부,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전문보기]

정부는 '18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해외 임상3상 위탁연구개발비를 신성장 연구개발비에 포함하고,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신성장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은 시설은 정비함.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력개발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관리를 강화함. 적격 분할 시 주식 승계 요건을 합리화하고 최근 시중금리를 반영하여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상하는 등의 개정안을 포함함.

#### 국세청, 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전문보기]

성실납세 협약제도 대상 기업 범위 확대, 협약제의 폐지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반영하기 위해 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함. 국세청의 신청제의를 폐지하고 기업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납세자의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진단과 성실신고 검증을 연3회에서 연1회로 축소함. 또한 수입금액 1천억원 미만에서 1천 5백억원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함.

#### 기획재정부, 「新 통관절차법」 제정 추진 [전문보기]

정부는 '19.2.14(목), 홍남기 부총리 주재 제 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新 통관절차법 제정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음. 통관 규정이 「관세법」의 일부로 구성되어, 조세와 관련성이 적은 '사회안전' 및 '수출입 지원 강화' 등을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어, 관세법에서 분법(分法)된 「新 통관절차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기획재정부. 관세청은 新 통관절차법을 제정하기 위해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금년말까지 법안을 마련하고, 2020년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

[예규·판례]

**[판례1] 흡수합병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된 소멸회사의 주식에 갈음하여 교부된 존속회사의 합병신주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없음**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30644 판결
-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이 흡수합병에 따라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합병구주에 상응하여 합병신주를 배정받아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친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실명전환한 사안에서, 합병신주에 대하여 제한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한 점, 더구나 흡수합병에 따라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고, 이때 소멸회사의 주주는 통상 합병구주의 가치에 상응하는 합병신주를 배정·교부받게 되므로, 합병 전후로 보유한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도 감안하여야 하는 점, 또한 최초로 명의신탁된 합병구주와 이후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합병신주에 대하여 각각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인수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도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에게 흡수합병에 따라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판례2]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음**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75873 판결
- 원고가 2013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조세심판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이 있자 세액감면의 원인이 되는 원고의 사정에 아무런 변경이 없음에도 원고가 세액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재처분을 한 사안에서,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80조의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음.

**[판례3] 공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자신의 소유 부분에 관하여 각각 별도로 매매대금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작성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57452 판결
- 공유자인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가 같은 날 동일한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자신의 소유 부분을 각 양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45억 원, 65억 원으로 각각 정하여 매매계약을 별도로 작성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0조제2항에서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만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 바, 각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 매수인들, 문서의 양식 및 그 밖의 조문 내용이 동일하다거나, 양수인들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양도받은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합병등기를 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모두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안분계산조항을 적용할 이유가 없고,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자신의 소유 부분을 각각 별도로 양수인들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례4] 「아태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의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 규칙에 따른 협정세율의 적용이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님**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45813 판결
- 「아태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은 아태무역협정 부속서에서 정한 직접운송 규정을 원활히 실시·집행하기 위하여 관세당국에 제출할 증명서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신빙성을 높게 보는 대표적인 증빙서류들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음. 따라서 제1호의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다른 신빙성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운송 간주 요건의 충족을 증명할 수 있고, 단지 위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아태무역협정의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는 없음.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 시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아태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원심으로서는 이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통과 선하증권' 이외의 다른 증명서류에 의하여 이 사건 무역협정 부속서Ⅱ 제5조나항 내지 이 사건 규칙 제8조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

**[판례5]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이를 대체하여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3726 판결
- 캄보디아로부터 베트남을 거쳐 수입된 잠수복 등 물품의 수입신고 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아세안 FTA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 부과한 사안에서,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원산지규정의 부록인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9조 라호에 포괄적인 증명 서류에 관한 문구를 둔 것은 개별적인 물품 운송의 조건과 상황에 맞추어 적합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운영절차 제19조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필수서류들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원심은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한 직접운송 간주 요건 충족에 관한 심리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스스로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판단하였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한·아세안 FTA에서 직접운송으로 간주하기 위한 요건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판례6] 권리사용료에 전체설비 등과 관련성이 없는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이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권리사용료 전액에 대해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조정액을 산출할 수 없음**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4110, 2016두34127(병합) 판결
- 원고들이 일본법인 아사히글라스 주식회사(AGC)로부터 LCD 유리기판 생산에 사용되는 수입설비를 수입하고, AGC의 특허·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LCD 유리기판을 생산하면서 권리사용료를 AGC에 지급한 사안에서, 피고는 쟁점 권리사용료 전액에 대해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이 사건 고시) 제3-4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전체설비 등의 가격 중 당해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조정액을 산출한 후, 이를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나,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관세청장이 이 사건 고시 제3-4조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항은, 권리사용료 중 수입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인정되는 금액을 산출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바, 쟁점 권리사용료에는 수입설비 중 일부와 관련되어 지급된 특허·노하우의 대가 외에도 전체설비 등과 관련성이 없는 공정관리·사업운영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 권리사용료 전부에 이 사건 고시 제3-4조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한 처분은 위법하고, 달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 권리사용료 가운데 이 사건 수입설비 중 일부와 관련되어 지급된 특허·노하우의 대가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음.

**[심판례1]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개정 이전에 수령한 배당금의 경우, 선입선출법을 전제로 하여 손회사의 사업연도별 잉여금과 법인세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할 수는 없음**

- 조심 2018서2340, 2018. 12. 28.
- 외국자회사가 수년에 걸쳐 이익 또는 잉여금이 축적된 상태에서 배당을 할 경우 배당금의 원천이 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어느 사업연도로 볼 것인지는 절대적이거나 선형적으로 타당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2014.2.2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의 후단에 선입선출법이 규정되기 이전까지 배당금 조성의 원천이 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배당일에 가까운 사업연도를 특정하여 이익 또는 잉여금을 배당의 원천으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서울행정법원 2017.7.21. 선고 2015구합71822 판결, 같은 뜻)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위 시행령 개정 이전에 수령한 배당금에 대하여 선입선출법을 전제로 하여 외국손회사의 사업연도별 잉여금과 법인세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판례2] 금융지주회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자문기관에게 지급한 쟁점자문용역수수료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조심 2018광3427, 2019. 1. 9.
- 청구법인이 비록 종속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나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라 할 수 없고 종속회사 지분을 보유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면세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금융지주회사로서 주식회사 ■■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등의 자문기관에게 쟁점자문용역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지주회사로서 그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업무관련성이 있고 청구법인은 종속회사를 지배하면서 경영관리 및 자문용역 등을 제공하므로 쟁점자문용역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과세대상사업의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문용역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례3] 프렌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일부 가맹점에게만 부여한 인테리어 감리비 등의 할인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 조심 2018중2383, 2019. 1. 17.
- 청구법인 전체 매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식자재매출의 수익창출을 위하여 가맹점 유지가 필수적인데, 보다 많은 가맹점 유치를 위해 '수도권특약', '다점포특약', '임직원특약' 등의 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충족하는 가맹점에 대하여 가맹비·교육비·인테리어 감리비 등을 할인하여 준 것으로 확인되는 점, 가맹점은 입지여건, 점포면적, 테이블 수, 유동인구 수, 예상매출액, 건물 노후도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가맹점 유치는 각각의 개별영업을 통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으며, 본사가 각 가맹점 유치를 통해 얻는 원재료 매출 수익도 가맹점별로 다를 것으로 보이는 점, 73개 가맹점 중 33개의 가맹점(45%)에 대하여 가맹비 등을 다르게 지급받은 것은 가맹점 유치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가맹비 등 할인금액은 본사가 가맹점주와의 친목도모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원활한 사업활동을 위해 가맹점간 합리적 수준의 차별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 가맹점에게만 부여한 인테리어 감리비 등의 할인 또는 면제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례4] 공공임대주택을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야 함**

- 조심 2017서1239, 2019. 1. 23.
- 청구법인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쟁점승계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별표1]의 각 규정에 따르면, 표준건축비는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의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축비와는 구별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쟁점판결에서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확인하여 판시한 점,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한 분양전환가격이 아닌 건축비 상한인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쟁점승계주택을 승계함으로써 그 차액만큼 분할법인은 분할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고, 청구법인은 분할차익 과소계상, 감가상각비 과대계상 등을 통해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승계주택을 시가보다 고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분할 당시에 표준건축비를 기초로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은 「법인세법」상 시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예규1]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였는지 판단 시 직접보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 2019. 1. 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소유 여부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직접 보유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예규2] 적격분할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은 분할 전후 사업부문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 및 부채가 승계되면 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2, 2019. 1. 8.
- 「법인세법 시행령」 (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은 분할 전후 사업부문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 및 부채가 승계되면 되는 것이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모든 자산 및 부채가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예규3] 군수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갑)에게 군수품을 납품하는 물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을)가 해당 군수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해당 군수품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37, 2019. 1. 14.
- 국군이 공고한 군수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어 국군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갑)에게 해당 군수품을 납품하는 물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을)가 해당 군수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자기명의로 수입통관한 후 갑에게 공급하는 경우, 을이 수입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예규4] 그룹 관계사들이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그 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관계사간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정산·지급하는 것은 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85, 2019. 1. 14.
- 그룹의 관계사들이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그 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연구개발의 수행을 위해 관계사 중 한 법인(갑법인)의 조직 내부에 공동조직을 설치하여 갑법인이 연구개발비용을 선부담하고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관계사들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는다면,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예규5] 본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본점에서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자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된 경우 해당 지점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08, 2019. 1. 28.
- 본점과 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를 본점에서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자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된 경우 해당 지점은 「부가가치세법」제4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의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예규6] 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한 비용분담약정에 따라 반환되지 아니하는 이행보증금(개발비용 분담금)을 지급하고 제품 개발이 성공하면 제품에 대한 판매권한과 지적재산권 등을 각각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이행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124, 2019. 1. 30.
- 갑법인이 신약 등을 개발하는 을법인과 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한 비용분담약정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는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 제품 개발이 성공하여 을법인이 생산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이행보증금을 해당 제품의 외상매출금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에 따른 역할을 서로 분담하고 그 결과물의 사용을 공유하는 경우 갑법인이 부담하는 이행보증금은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예규7] 비거주자가 임원이며 보수의 지급원인이 되는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인 경우에는 해당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061, 2019. 2. 20.
-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미국 거주자)를 채용하여 미국에서만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대가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거주자가 임원으로서 보수의 지급원인이 되는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해당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소득세법」제119조제7호 및 「한·미 조세조약」제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비거주자의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인지 여부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삼성 KPMG 조세본부 소식]

---

### [기고] BUSINESS Watch, 토지 측량 다시 하고 조정금 받았다면 [기사보기]

Tax 본부 김경조 S.Manager (02-2112-3415)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tcoe@kr.kpmg.com](mailto:kr-fmtaxtcoe@kr.kpmg.com)

© 2019 Samjong KPMG.,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